경운대학교 재입학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재학 중 경제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에게 면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재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입학 인원산출) 재입학 인원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학기 또는 직전학년도(4월 1일, 10월 1일)의 3·4학년 제적자 수를 전체 정원 내·외 및 주·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 여석을 재입학 여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허가대상자는 미등록 및 경제적, 신체적 사유 또는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제적된 자로 하되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4조(재입학 허가 절차) 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교학처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1. 재입학원서(소정서식) 1통
2. 재입학 사유서 1통
3. 성적증명서 1통
4. 학적부 사본 1통

② 재입학의 허가는 원적 학과에 한한다.

③ 재입학 희망 인원이 재입학 가능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학과별로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④ 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5조(재입학 시기)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초로 한다.

제6조(학점인정 및 이수) 재입학의 이전 취득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현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입학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징계제적자
2. 이중학적 보유자
3. 기타 학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칙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